

서울특별시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박순규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릴 수 있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본 개정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에 따르면

의원이 추천한 표창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는

제1공적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을 운영위원장이 맡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당위적인 근거가 부족합니다.

또한 현행 조문상으로는

제2공적심사위원회가 심사하는 표창대상자와 추천자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아

조문을 보는 사람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안은

제1공적심사위원회 위원 구성 방법을 변경하고

제2공적심사위원회가 심사하는 표창대상자와 추천자를

조문상에 확실히 구분해

조례 운영의 명확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개정안의 취지를 살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